

청주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1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동근, 문찬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한철, 이상은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1. 5. 30.자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2,356,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56,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은 2011. 5.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처 E, 자녀 F, 피고, C, G, H이 있어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7. 피고 명의로 ‘2011.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I, J에게 2018. 11.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9. 6. 소유권이전등기(I, J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8. 26.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0805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2. “C는 원고에게 11,323,25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50694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9. 2. 19. “C는 원고에게 11,323,25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는 D의 사망으로 그 재산의 2/13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으로써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형제인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C는 위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C 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12,356,447원에 해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언제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등기원인일자인 2011. 5.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12. 7.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례적이고, 등기가 마쳐진 2016. 12. 7. 무렵 실제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일반상식이나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등기신청 접수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자료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라고 하고 있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등기원인일자로부터 수년 후에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을 가지고 함부로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등기가 마쳐진 무렵에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있었던 날은 등기원인일자인 2011. 5. 30.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소가 2021. 1.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